

라틴아메리카의 절대적 빈곤과 아동 인권에 대한 연구*

이광윤(부산외대 포르투갈(브라질)어과)**

- I. 서론
- II. 인권의 발전과 아동 및 청소년 인권
- III. 인권과 빈곤의 문제
- IV. 라틴아메리카의 절대적 빈곤과
아동 인권의 실태
- V. 결론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는 기본적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의 보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실현시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를 동등하게 향유하고 행사하는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여야 한다.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BM3062).

** Kwang-Yoon Lee(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t. of Portuguese, noelalee@pufs.ac.kr),
“O estudo sobre a situação de direitos humanos da criança do adolescente e a questão grave da pobreza na América Latina”.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와 관련된 아동권리 보장에 있어 획기적 사건이며, 그것을 완전하게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게 만든 것은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으며, 그 성과물의 종합이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¹⁾이었다. 이 조약을 통하여 아동의 인권 보호는 그 절정을 맞이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비로소 아동은 기존의 보호의 대상 및 권리 향유의 주체에서, 나아가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²⁾ 1924년의 국제연맹 ‘아동의 권리선언(제네바선언)’³⁾ 이래 65년 만에, 그리고 1959년의 UN ‘아동의 권리선언’ 이래 30년 만에, 1989년 UN에서 채택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아동 환경의 악화가 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는 5세 미만의 아동이 해마다 1,400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으며 ‘절대적 빈곤’하에 있는 아동은 1억 5000만 명에 달한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아동학대, 마약, 성적 착취, 소년범죄 등이 넘쳐 아동의 문제

- 1)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협약은 아동권리선언들이 천명하는 ‘특별한 보호’ 개념으로서의 권리를 ‘개인의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서의 권리로 전환시켰으며,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약자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로부터 이들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전문과 54개조로 되어 있는 이 조약은 1990년 9월 2일에 세계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게 됨으로써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2003년 10월 현재 192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 이 조약은 무차별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의 생존 및 발달, 보호 그리고 아동의 참여라고 하는 4개의 주요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 2) 아동의 권리조약과는 별도로 개발도상국의 고통 받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또 하나의 노력은 1990년 9월 29일-30일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아동을 위한 세계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이었다. 이 회담에서는 인류사상 최초로 ‘아동’이라는 단일 주제 하에 전 세계 71개국 국가원수들을 포함한 158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1990년대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선언과 국가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3) 1924년은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하나의 주체로서 인식했음을 최초로 보여주는 해였다. 같은 해 9월 26일 국제연맹 총회는 민간위원회인 ‘아동구호국제연맹(Save the Children International Union)’은 5가지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선언’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이후 새롭게 구성된 유엔의 1948년 아동권리선언이 있기까지 약 25년 동안 국제연맹 회원국들이 따라야 할 원칙으로 자리를 지켰다.

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지금이야말로 어른들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는 절실함이 이 조약에 담겨 있는 듯하다. 곧 아동을 분명히 인권의 주체로 못 박아 놓은 이 조약은 분명 아동을 ‘자비로운 주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크나큰 진전이며 세계가 아동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권리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집시켜 놓은 세계사적 문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도 아동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이미 지난 1990년 또는 그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따라서 협약 당사국의 일원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브라질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진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함께 나아가는 수준은 아니지만, 협약비준을 통해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인정하며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절대적 빈곤의 상태는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빈곤은 곧 인구의 증가를 초래하며 인구의 증가는 곧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빠른 속도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브라질을 포함해 도시 빈민지역과 농촌지역의 라틴아메리카 아동들은 비위생적 환경과 영양결핍, 빈곤 등으로 인해 매년 수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고 있으며, 이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값싼 노동력에 착취당함으로써 빈곤의 세습화를 반복하게 되고⁴⁾, 또 콜롬비아와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내전으로 인하여 아동이 전쟁에 휩쓸려 가치 없는

4) 브라질의 경우 지난 2001년, 5-9세의 아동 29만 6천여 명, 10-14세의 아동 및 청소년 193만 5천여 명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5-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89.7%만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 중 48.6%가 전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중 최저임금의 1/2에서 1배를 받는 비율은 77%에 불과하여 열악한 노동현장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연구원(IBGE), CENSOS 2003.

희생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고아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볼 때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하나의 인격체로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의 빈곤퇴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먼저 인류 보편의 언어인 ‘인권’과 관련지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의 대상으로 이전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시 이후 심화된 빈곤의 상황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문제를 상호 관련지어 살펴보고 그들을 거리로 내몰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게 된 현실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이 지역에서의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보호와 확대를 목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의 퇴치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보다 ‘대안적인 노력’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브라질을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범주는 국가별로 실정법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따른 범위에 의거하며 또한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함을 미리 밝힌다.

II. 인권의 발전과 아동 및 청소년 인권

II.1. 인류 보편의 언어, ‘인권’

지난 20세기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끊임없는 국지전으로 대변되는 야만과 폭력의 세기였지만, 동시에 인류가 ‘인권(Human Rights)’이라는 보편의 언어를 발견하고 UN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권력의 행

사목적과 과정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권기준과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한 세기이기도 하였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⁵⁾은 전 인류의 이름으로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인권기준으로 천명되었는데, 이는 국가 간 침략행위와 자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깨달음에 기초한 것이었다. 인권의 실현이 한 개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이 깨달음은 이후 국제인권법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내었다.

인권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부터 연유되는,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한 삶의 조건을 향유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므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때문에 인권은 자격을 논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의 원성은 인권의 대원칙으로서, 현실에서 이러한 보편성의 예외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인권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근대 초기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간섭과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제한적인 자유권만 인권으로 보장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을 제어하고 감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도 인권의 이름으로 보장되고 있다.⁶⁾ 현실의 권력관계 속에서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의 범주를 최대한

5) 1948년 12월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선언으로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시민적·정치적 성질의 자유, 즉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6) Alves, J. A. Lindgren(2005), “Os direitos humanos na pós-modernidade”, São Paulo: Perspectiva, p. 22.

확장함으로써 자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원했고, 확장된 권리의 획득을 위해 투쟁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의 역사는 모든 인간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인권의 주체를 확대해 온 역사, 그리고 인권의 범주와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인권의 개념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해 온 역사였다.

국제인권법은 ‘실천이 유보된 고도의 수사(修辭)에 불과하다’⁷⁾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나 AIDS 보균자, 자결권을 부정당하고 있는 소수민족,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불안하게 기거하고 있는 난민과 이주노동자, 생존을 벼랑 끝에 몰려 신자유주의자에 맞서 충을 빼어든 멕시코 사빠띠스따 해방군 등의 존재가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과 가치를 재구성해야 할 과제를 폭넓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II.2.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역사적 등장

이러한 인권의 역사 속에서 아동의 인권은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의 개념은 근대에 이르러서였다.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아동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과거시대와 비교해 크게 바꾸어 놓으면서 독자적인 존재로서 역사적으로 등장시켰다. 의학의 진보와 과학의 발달에 따른 생활환경의 개선으로 유아사망률이 감소되면서 아동의 인구가 늘어나자 이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곧 자본주의 생산체제로의 이행은 봉건사회에서 생산의 공간이었던 가족단위를 소비의 공간으로 전환시켰고, 이에 따라 가족 내의 아동노동의 가치도 저하된다. 이후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에서 선호되던 아동노동이 노동력의 안정적 재생산을 위협할 정도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

7) Ibid., p. 24.

래하자,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장법 등 각종 입법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아동들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학교나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들어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강조하는 태도는 더욱 확산되었는데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아동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적 자원으로 질병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따른 국제적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의 인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1923)’이 창립되었는데, 이 단체에서 기초하여 발표한 선언문이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초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이른바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이 탄생하게 되었다. 제네바선언은 아동들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라고 규정하면서, 아동들을 기아와 질병,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재난 시 아동들이 우선적인 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였다. 제네바 선언은 국제사회가 아동들의 권리보호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의 기초는 ‘권리선언’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구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⁸⁾

또 한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도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내란이 지

8) 5가지 밖에 안 되는 조항이 말해주는 제네바선언은 권리의 내용이라 하기에는 빈약하기 그지없으며 ‘비행아동은 교화해야 한다’는 데서 드러나듯 권리주체가 아닌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호와 구제조차 하고 있지 못한 현실, ‘배고픈 아동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수행하고 있지 못한 어른들의 자화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속되고 있었으며, 빈곤과 기아, 영양실조, 방임과 학대, 인종차별과 착취, 마약남용, 문맹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동들이 생명과 정상적인 발달이라는 1차적 요구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들의 권리를 성문화 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오랜 준비작업과 논쟁을 거쳐 1959년 유엔이 ‘아동의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선언은 아동들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기했다. 또한 아동들에게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라는 최초의 시민권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사회권이 부여 되었는데, 이 점에서 보호와 구제의 아동관에 입각했던 제네바선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들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개인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아동학대나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소수민족이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동들 또한 기본권과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지지 못한 사회적 주변집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아동들의 권리를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 결과 1989년 11월 20일, 마침내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역사적인 탄생을 보게 된다. 이 조약은 2000년 1월 현재 유엔이 채택한 여러 조약 가운데 191개국이라는 가장 많은 비준국을 보유한 영향력 높은 국제조약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조약이 기반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들은 성인과 다름없는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권리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시기이다. 셋째, 행복한 아동기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아동들'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성인은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조약은 아동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인과 다름없는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별한 보살핌과 배려를 '권리'로서 요구한다는 것은 아동들이 온정적 시혜의 대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지속적 성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보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우선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의미한다.

조약이 성과 인종, 종교와 출신 등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살펴보면, 성인과 다름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존중받을 권리',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민,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휴식 및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아동들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 속에서 성장하고 자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조약은 아동들이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여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인과는 다른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상응하는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학대나 방임, 유해한 노동, 성적 착취 등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난민 상황, 무력분쟁, 장애, 형사절차과정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아동들이 우선적이고도 긴급한 보살핌과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아동들에게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아동들은 ‘가장 뒤늦게 발견된 인권의 주체’ 가운데 하나로서 국제 인권무대에 등장했다. 아동들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전환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아동들을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상정할 때에는 무엇이 아동들에게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사람도,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도 ‘자비로운 성인’이다. 때문에 아동들은 보호자들, 국가들 간에 성인에게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이 경우 책임의 주체가 전혀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아동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할 때는 아동들 자신이 무엇이 자신에게 필요하고 가장 이로운지를 표현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된다. 또한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권리의 주체는 의무의 주체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

III. 인권과 빈곤의 문제

빈곤은 인권침해인가라는 질문은 다소 낯설다. 왜냐하면 전통적 의미의 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특히 신체권과 언론과 집회의 자유의 보장, 즉 자유권을 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인권은 시장경제 하에서의 기회균등과 분배정의, 나아가 사회정의의 포괄한 사회 경제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권은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갖는 권리이며 오늘날 국가와 시장경제의 위협으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보장을 위한 개념⁹⁾이라는 정의가 시사하듯이 인권이라는 시각은 정치적 민주화와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경제정의의 문제를 동시에 보는 유용한 잣대로써의 역할을 한다. 1990년대 들어 인간답게 살 깨끗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비롯하여 인간과 환경, 그리고 개발의 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강조됨에 따라 인권의 정의는 더욱 더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9월 유엔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정상회담에서 각국은 '새천년 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2015년까지 꼭 성취해야 할 '극빈과 기아 퇴치, 보편적인 초등교육의 성취, 양성평등 증진' 등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8개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인권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권에 초점을 맞추었던 전통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인권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유권적 의미의 인권침해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여 커뮤니케이션능력을 감소시키고 각종 기회와 재화로의 접근을 제약함으로써 오히려 빈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역으로 소외당하는 빈곤층은 시민사회의 제반 권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빈곤은 인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결여, 즉, 빈곤은 사회성원으로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의 결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문제라기 보다는 기본적인 능력이 박탈당하는 상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III.1. 빈곤의 문제는 곧 인권의 문제

가난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며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걱정하면서 생존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하게 된다. 이들은 의무

9) Donnelly, Jack(1993),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Westview Press, p. 196.

교육 이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소외되면서 노동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범위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건강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밖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게 된다.¹⁰⁾

그러나 무엇보다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 그 이상의 고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할 일도 없게 되면서 무기력한 삶을 연명하고 사회적으로는 불필요한 인간으로 버림받음으로써 이중삼중의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인권이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좀 더 나은 삶의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빈곤한 사람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 속에서 자신의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은 인간을 인간일 수 없게 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박탈'이며 기회와 선택권의 도발(挑發)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내용들, 즉 건강하게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하면서 창의적인 생활을 만들고, 인간의 자유, 존엄,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속에 살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것이다.

빈곤문제는 한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소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권 침해이다. 인권이 인간 권리의 '실현' 문제라면 빈곤은 인간 권리의 '박탈' 문제인 것이다.

빈곤에 대한 인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권리의 박탈이라

10) 권리의 내용으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는 물론,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권, 쾌적한 환경권 같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개인의 안전권이나 재판권, 참정권 같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소득의 관점(Income perspective)으로 빈곤의 1차적 원인은 소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수준이 빈곤선¹¹⁾으로 정의된 수준 미만일 경우에만 가난하다고 말한다. 이 개념은 가장 일반화된 빈곤 개념으로 소득빈곤은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의 1/2미만의 상대적 빈곤과 1/3미만의 절대적 빈곤으로 나뉜다. 보통 절대적 빈곤이란 용어 대신 극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둘째, 기본적 욕구의 관점(Basic needs perspective)이다. 빈곤한 상태는 식량을 포함하여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물질적 요건의 결핍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개념의 결핍은 개인적인 소득의 결여를 넘어서는 것으로, 빈곤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제공해야 하는 보건, 교육 그리고 필수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고용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리고 셋째, 능력의 관점(Capability perspective)이다. 빈곤은 인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의 결여, 즉, 사회성원으로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기회의 결여를 의미한다. 경제학자 Amartya Sen은 그래서 빈곤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 문제로 보기보다는 기본적인 ‘능력의 박탈’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이와 같은 분석에 적합한 내용들은 양호한 영양 상태, 적절한 의생활 및 주생활, 예방 가능한 질병 등과 같은 물리적인 것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능력의 관점은 소득과 필수품의 상대적 결핍이 최소한 능력의 절대적인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지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다.

11)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생활수준으로 정의되는 빈곤선(poverty line)은 영국의 사회학자 벤저민 S. 라운트리(Benjamin S. Rowntree)가 “빈곤 - 도시생활의 한 연구: Poverty - A Study of Town Life”(1901)에서 처음 제기하였으며, 빈곤선 이하를 제1차 빈곤, 빈곤선을 약간 상회하는 빈곤을 제2차 빈곤이라고 구별하였다. 이 개념은 후에 각국의 연구자들에게 이용·연구되어 사회복지대상을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빈곤선은 화폐단위로 표시한 절대빈곤선의 개념이다. 보통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설정한다.

12) Sen, Amartya(1982),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s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pp. 112-114 참조.

III.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세계화,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빈곤문제는 과거의 고전적인 빈곤문제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빈곤선 이하의 절대빈곤층이 다수였고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자원 자체가 적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빈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지만 고도성장을 통해 일정정도 사회적인 부가 생산되고 있는 현재에 빈곤 문제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건 빈곤 문제는 경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지만, 신자유주의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빈곤의 심화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른바 ‘풍요 속의 빈곤’의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 시기에 정리해야 할 빈곤의 문제는 소득 불균형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측면으로만 정리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빈곤은 인간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낮은 소득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이로부터 식생활의 저하, 주거 수준의 하락,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의 하락 및 포기를 동반하게 된다. 나아가 가족의 해체, 범죄율 및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은 사회적 지위도 약해지므로 소외감은 더욱 증대되고 결국 사회에서 자신을 실현시키는 길은 더욱 멀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러한 빈곤이 가진 여러 얼굴 이면에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절망하는 사람들과, 많은 경우, 속수무책인 정부들이 자리하고 있다.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착취로 새로운 것이 없지만, 오늘날의 세계화는 그것의 형태, 그것이 이루어지는 정세적인 맥락,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자본의 전략적 동기 등의 여러 측면에서 과거의 세계화와 다르다. 오늘날의 생산체제는 케인즈주의가 지배적이었던 지난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생산성에 의해 더 많은 절대량의 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생산체계의 문제로 인해 인간의 욕구는 지난 시기보다 더 제약 당하고 있다. 세계화는 장기적 과정이며 한 국가에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세계적인 규모로 활동한다.

세계화는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 간의 거리를 좁혀 상호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 이면에는 경쟁과 효율성을 앞세운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경제 통합은 현실적으로 국가들 간의 분절화 및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특히 세계화는 이런 현상을 더욱 양산시키고 있다. 경제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는 금융의 세계화이며 생산순환의 세계화(생산과정의 세계화)이다.

세계화 현상을 논리적으로 지지하고 확산시키는 주요 동력은 한마디로 신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이다. 신자본주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동시에 자본의 이윤율이 낮아지는 상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부의 분배에 관한 신자본주의의 관점은 이중적이다. 첫째로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둘째로 이들 소수를 제외한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은 궁핍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신자본주의 하에서는 불의와 불평등이 현실 세계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신자본주의는 복지 증진과 같이 부담되는 일들을 강요하지 말고, 정부 기능의 초점을 금융자본/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개발의 수단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무한한 경쟁을 강조하며 극단적 경제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강제하려는 신자본주의적 흐름은 인권 신장에 도전하는 유력한 세력이다.

초국적 거대기업의 성장은 발전한 국가들에서의 사회진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회진보는커녕 그와 반대로 부국이라 하더라도 거부(巨富)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사회적 불평등은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완화되기는커녕 끝이 더욱 깊어진다. 결국 빈곤은 인권 전반의 심각한 후퇴를 낳고, 다시 이런 후퇴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근본적으로 신자본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정이 없는 한 세계적 차원에서 심

화되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Ⅲ.3. 라틴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와 빈곤

지난 1990년대 이후 풍미한 세계화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는 그 말이 나타내는 것처럼 무역, 금융, 정보의 흐름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하고 또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개방과 자유화를 촉진했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로만 점철된 세계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 세계적 확대 논리에 다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본축적이 고도화된 금융자본이 세계시장의 통합을 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자본주의를 실현시키는 논리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프로그램은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제3세계 국가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면서 자본의 세계화를 간단 없이 추구하고 있다. 1946년 설립된 IMF가 80년대부터는 미국 편향성을 노골화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을 주된 일로 삼아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위로 기능하게 되었다. IMF를 통한 금융지원은 바로 초국적 금융자본이 세계시장의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매개로 작용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기치로 세계자본주의를 확대해 나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그나마 형성된 국내자본이 해체되고 외채의존도를 가중시켜 내적으로 취약한 자본주의 상태에 놓이고, 국내 자본형성이 미약한 저개발 국가에서는 자본형성 기회조차 근본적으로 차단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건설기회를 박탈당하고 초국적 금융자본에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게다가 제3세계의 보편적 특성중 하나인 비민주적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지원, 결탁하여 정치·경제적 억압구조로 민중의 수탈을 더욱 공고히 내화시킨 보편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빈곤이 제3세계권에서 광범위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강제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제3세계를 옥죄는 침탈 과정에 다름 아니며 제3세계 빈곤을

더욱 공고히 고착, 심화시키는 주역인 것이다.

1980년대에 라틴아메리카는 세계공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물러나고 어떤 형태로든 민간 민주정부가 들어섰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맞게 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경제안정화를 꾀해야 하는 것이었다.¹³⁾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과도한 외채와 높은 인플레이, 그리고 엄청난 공공부채로 인한 경제의 난국 상황 속에서 외채를 갚을 수 없게 되었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갑작스런 차관 중지의 형태로 나타난 은행들의 반응은 혹독한 구조조정 수단들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라틴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신자유주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사례가 되었다.

당시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은 경제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부문 적자의 축소와 비효율성의 감소, 국가기구의 낭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실제로 이러한 일련의 수정은 경제위기에 의해 세계 경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인 국제 금융기구들, 특히 IMF, 민간은행들과 채권국들에게 거대한 권력을 제공함으로써 이행되었다. 이들은 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가혹한 긴축정책과 수출지향으로 생산을 재편하는 수단들과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강제하였다.

긴축과 자유화 정책의 결합은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축, 공식부문 특히 공공부문 고용의 축소, 실질 소득의 감소,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의 후퇴를 유발했거나 심화시켰으며 예산삭감은 공공부문의 해고, 사회지출의 축소, 기초 식료품과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의 축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가난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시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사회적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공공, 민간부문 피고용자들의 실질임

13) 이 두 가지 목표는 그러나 종종 상충적인 조치와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조치는 경제안정화에 역행하고,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취약한 민주주의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정진영(1994), 「브라질의 경제개혁」, 계간사상, 가을호, pp. 137-138 참조.

금의 하락과, 공식부문 고용의 상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CEPAL의 사회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 1999년 라틴아메리카내의 주요국가의 전체 인구 중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¹⁴⁾

<표 1> 라틴아메리카 주요국가의 빈곤의 정도

(단위: %)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쿠아도르	멕시코	베네주엘라
빈곤률	26	35	21	63	40	50

출처: CEPAL,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1992-2000에서 일부 발췌

특히 브라질의 경우, 전체 인구 172,559천명(2000년) 중 약 6,0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빈민으로, 일인당 GDP는 최빈층의 8배, 빈곤층의 4배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지난 1993년에 비해 무려 600여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외자유치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의 모범생으로 불렸던 브라질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의 실업사태로 극빈자를 양산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현 정부는 정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여 소위 ‘기아제로(Fome Zero)’ 정책을 펴면서 결식가구 중 130만 가구에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360만 빈곤가정에 ‘가족수당(Bolsa Família)’을 제공하면서 빈곤층 구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III.4.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인권 노력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세계화는 필연적인 것이 아닌 거부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각인 되고 있으며 그 대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를 거부

14) Save the Children Suécia(2003), “Diagnóstico sobre la situación de niños y adolescentes en 21 países de América Latina”, Informe de Noticias Aliadas, Lima, p. 195.

하는 속에서 찾자는 것이다. 사실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NGO들은 각종 국제기구 및 협정에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의 삽입을 주장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IMF의 개혁이나 다른 유엔의 기구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주장에 따라 몇몇 국제기구들에는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이 삽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이 삽입되었다고 해도 제대로 지켜진 적은 없으며,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가속화되었고, 오히려 이런 사회조항들의 삽입이 그들 기구들이 행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해왔을 뿐이다.¹⁵⁾

1999년 11월 시애틀 투쟁은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에게 강력한 반대를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 신자유주의주의에 저항하는 투쟁이 1999년 시애틀 이후 세계적 저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¹⁶⁾ 이어서 2000년에도 스위스 다보스, 미국 워싱턴, 체코 프라하 등에서 신자유주의의 반대 투쟁은 격렬하게 타올랐다. 당연하게도 빈곤 문제의 대안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내에서의 조세개혁,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서 실업을 극복하는 방안,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통제, 외채상환 거부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일국적 차원에서 과연 제3세계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다. 이미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제3세계의 나라들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는 것은 또 다른 초국적 자본의 압박만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책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고전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먼저 민주주의의 강화

15)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2001),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pp. 30-31 참조.

16) 1999년 11월 시애틀에 모여든 각국의 민중들은 세계무역기구나 뉴라운드 출범을 반대했다. 그들은 세계무역기구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어야 하고, 그 전 단계로는 최소한 우리 삶의 핵심 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공공서비스, 생명특허, 문화 등이 그것이다.

다. 각성된 민중들에 의한 정치권력의 재편, 민주화의 공고화가 이뤄질 때 각국의 정부는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초국적 자본의 횡포를 방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도록 교육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중들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가 이뤄지고, 국가권력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발전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필요하다. 민중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발모델이 설정되고 민중들의 이익에 맞게 개발이 시행되고, 그 혜택도 골고루 분배하는 일은 불평등의 심화로 야기되는 빈곤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빈곤의 심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권과 자유권을 비롯한 인권의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빈곤층을 비롯한 민중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이를 국제적으로 연결하여 연대하면서 신자유주의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의 불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라틴아메리카의 절대적 빈곤과 아동 인권의 실태

인권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로,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지위 등과 같은 그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을 갖는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은 현실에서 차별당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의 대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아동이나 여성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와 편견,

차별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UNICEF는 “남미의 아동들 4000여만 명이 거리에서 살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약 75%정도는 가족이나 돌아갈 집이 있지만 나머지 1000여만 명은 거리에서 먹고 자며 생활 한다”¹⁷⁾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구걸하거나 교차로에서 자동차 유리창을 닦거나 또는 거리에서 작은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매춘을 통해 빵을 살 돈을 구하고 저녁이면 버려진 건물이나 공원, 시장의 한 귀퉁이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들은 바로 오늘날 남미의 슬픈 자화상인 ‘거리의 아이들’이다. 15세 미만의 이러한 거리의 아동들에게는 인생의 계획도, 미래도 없으며 다만 ‘생존을 위한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

유엔 중남미경제위원회(CEPAL)가 지난 2003년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라틴아메리카의 빈곤층의 수는 2억2천만이고 이 중 극빈층은 9500만 명으로 이는 전 인구의 49% 및 18%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1997년부터 빈곤자와 극빈자의 비율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근 5년 동안 빈곤 극복 진척이 정체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2000년의 경제적인 성과로 400만 명 이상의 빈곤층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과 2002년 국가수준에서의 이 지수 평가는 변화가 가장 적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비차별 원칙이라는 ‘인권의 보편성’은 라틴아메리카의 빈곤 특히 절대적 빈곤 앞에서 꼭 필요한 최소 수준의 만족과 존재의 이유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에 거의 접근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절대적인 빈곤의 조건 속에서 인권 실현의 행위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부족한지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 해준다.

절대적 빈곤이라는 세습적 상황이 연출하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구조 하에서 현저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인 아동의 인권문제를 살펴보고 할 때, 물론 라틴아메리카 사회 내에서 아동

17) UNICEF(2002), *The Annual Report: The State of the World Children*.

18) 월간 중남미 정보, 2003년 9월호, 외교통상부.

의 수는 비록 소수를 의미하고는 있지만, 소수자는 수적인 차원에서 소수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그들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약한 위치에 있음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전체적으로 평등과 자유를 담보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IV.1. 절대적 빈곤이 미치는 인권의 해악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며, 그들은 공적 및 사적 자유를 행사할 처지가 아니다. 인권에 관한 2대 협약이 “(...)자유를 누릴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은 누구든지 자신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 질 때에만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그것들이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품위 있는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보편인권선언 제 25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에 거의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주거의 권리 측면에서, 국제협약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한 주택에서 살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의 권리는 특히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생활수준 권리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극빈자의 주택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불확실하며 또 불결한 환경에 위치해 가족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가정의 안정성을 잃게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건강과 고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최소한 무상교육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기본적인 학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획된 교육은 빈곤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주거의 불확실성과 그 결과 거리의 생활 때문에, 그리고 가정의 수입 부족으로 인해 가족의 생존을 위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면서 아동들은 정규학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하며, 안정성의 결여, 공간의 결여, 해로운 건강 환경, 혼잡함 등으로 인해 지적, 신체적 발달이 방해될 수밖에 없다.

넷째, 보편인권선언 제23조는 일할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뿐 아니라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품위 있게 생활하는 등 좋은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가 있지만, 집도 없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못한 극빈자들에게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하더라도 그 일은 매우 불안정하고 건강에 해로우며 또 임금이 너무 싸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모가 극단적으로 빈곤한 직접 결과로 아동의 노동과 이들에 대한 노동의 착취가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모든 사람이 최고로 이룰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지킬 권리’의 측면에서, 극빈자들은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도 접근 불가능하며 부적절하고 잘못 갖추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망의 위험에 처해있는 점을 볼 때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가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족을 보호할 권리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법 앞에서 한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등재될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와 신체적 보전에 대한 권리, 법 앞에서의 동등한 정의의 권리, 정치 문제에 참여할 권리, 사회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인간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인권은 빈곤 앞에서 그 정당한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오히려 절대적 빈곤이 인권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극빈한 생활은 가난한 생활조건,

비위생적인 주거, 실업, 질병, 교육 부족, 주변화 등 틀림없이 빈곤의 수평적 악순환 같은 상호의 불행을 악화해온 것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IV.2. 절대적 빈곤 하에서 유린된 라틴아메리카의 아동 인권의 실태

라틴아메리카는 80년대 이후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시대와 90년대 이후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질서를 경험하면서 거대한 도전과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근대 이후 보편화되어 왔던 인권의 이념과 인권보장체계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점령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을 민주화시키고 국제적인 조약과 기구를 만들어 국가로 하여금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도록 강제하였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보다는 경쟁을, 자유와 평등보다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인권운동의 강력한 대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회적 약자(노동자, 농민,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원주민 인디오,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생존권(시민,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는)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인권운동은 현재의 세계질서가 극명하게 야기 시킨 빈곤의 세계화 경향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해악은, 아동으로 하여금 값싼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의 착취적인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것 외에, 아동에 대한 매춘, 포르노, 인신매매를 포함한 상업적 성 착취, 그리고 이로 비롯된 빈곤에 의한 영양실조와 이와 함께 아동들로 하여금 어른들이 저지른 전장(내전)에서 가치 없는 희생의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거나 고아 혹은 난민으로 전락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2> 1999년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연령별 도시빈곤인구 현황

(단위: %)

구 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0-5세	40	52	30	71	61	22	62
6-12세	40	48	30	73	60	18	61
13-17세	30	38	24	66	52	12	52
전체	20	33	20	62	49	9	50

출처: Save the Children-Suecia. *Diagnóstico sobre la situación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en 21 países de América Latina*, 2003, p.195 참조.

앞서 CEPAL의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라틴아메리카 전체 인구 가운데 약 43.9%인 2억 2500만 명이 빈곤층이며 이중 약 4000만 명이 ‘거리의 아이들’로 전락한 현실을 확인하였다.

과테말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극빈층에 해당하며 유아의 6.4%가 5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고, 온두라스는 전체 인구의 80%가 이러한 극빈상태에 놓여 있다. 멕시코의 경우도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극빈층이 24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며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만 10명의 아동 가운데 3명이 거리에서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의 <표 2>에서 보듯이 주요국의 전체 도시인구 중 빈곤층은 에콰도르 62%, 베네수엘라 50%, 파라과이 49% 그리고 브라질 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서는 아동의 연령별 구분에서도 똑같은 국가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의 빈곤층이 많은 국가에서는 각각의 연령별 빈곤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세기를 이어온 원주민 빈민문제, 심각한 빈부격차 등 라틴아메리카의 고질적인 상처에 ‘가족 붕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최근의 UNICEF 보고서에 따르면, ‘거리의 아이들’ 중 42%가 가출한 아이들이며 39%가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25%가 가난 때문에 거리로 쫓겨난 아이들이며, 가출한 아이들의 62%는 가족의 정신적 학대(32%), 부모의 육체적 학대

(30%) 등의 이유로 거리로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거리의 아이들’ 중 절반이 넘는 수치가 본드나 마약, 마리화나 등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특히 멕시코의 경우, 이 숫자가 70%를 웃도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은 ‘거리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전락하고 ‘사회정화’라는 미명 아래 공권력이나 시민들에 의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온두라스에서만 557명, 과테말라에서는 294명의 거리의 아이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이러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절대적 빈곤에 의한 영양실조는 아동의 성장장애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장애는 학습장애를 수반하여 아동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문맹율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전체적으로 20%의 문맹률을 나타내고 있지만 기능적 문맹률을 합치면 그 수는 배로 증가한다. 10세를 전후한 브라질 아동의 총 수의 18%미만이 초등학교 4년 과정을 미처 마치지 못했으며, 19세 미만의 6천 500만 명 중 절반이상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7천 500만 명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국민 중 40%가 문맹이거나 부분문맹이며, 68%가 초등학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영양실조와 질병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를 휩쓸고 있는 에이즈(AIDS) 바이러스에 감염된 부모들에 의한 출산은 신생아의 생명에 결정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AIDS는 1990년 이후 ‘거리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 발생하는 에이즈 바이러스의 약 1/5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수십만 명의 아동들이 에이즈 바이러스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고 이 숫자는 21세기에 들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UNIC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온두라스에서만 약 1만 4000명이 아동들이 AIDS로 죽어가고

19) UNICEF, Annual Report, 2003.

있고 이로 인해 2010년까지 4만 2000명에 달하는 고아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도 11만 8000명의 ‘거리의 아이들’ 가운데 4%가량이 AIDS 양성반응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그러나 정부의 공식통계와는 달리 110만 명이 넘는 거리 아이들 이 멕시코에 존재하며 이들 중 약 70%가 AIDS 양성반응자라는 사실이 미확인되고 있다.²¹⁾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이미 사회 어두운 곳에서 자리 잡은 유아매춘시장의 존재와 AIDS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수많은 거리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나아가 AIDS 양성보균자의 출생이라는 더 큰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매춘 행위는 도미니카에서는 약 3만 명의 아이들이 순전히 가난을 면하기 위해 매춘 행위에 빠져들고, 브라질 전체에서는 약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큰데, 이러한 아동매춘은 나아가 미혼모를 양산하는 보다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AIDS의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15-19세 청소년 중 AIDS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모르고 있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히 볼리비아는 남녀를 합쳐 59%가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는 20%의 청소년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AIDS에 대한 보호조치를 모르고 있는 15-19세 청소년의 비율

국가	여자 비율(%)	남자비율(%)
브라질	11	9
니카라과	26	15
페루	32	22
볼리비아	33	26

출처: UNICEF(2000), *Lo que los jovens ignoram puede costarles la vida*. En: El progreso de las naciones 2000. UNICEF: New York.

20) UNICEF, Op.cit.

21) 이상의 모든 현황은 <별표>에 자세하게 설명, 도표화되어 있음.

또한 절대적 빈곤은 아동으로 하여금 값싼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의 착취적인 노동현장으로 내몰고 있는데, 과테말라의 경우 전체 아동 인구 중 83%가 가난과 함께 태어나 성장하며, 10-17세 아동과 청소년의 75만 명 이상이 노동에 시달리고 이들 중 3/4이 35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며 성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료를 받으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또한 지난 36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20만 명 이상의 아동이 고아나 난민으로 전락하여 이들 대부분이 ‘거리의 아이들’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의 노동은 7개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 유형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 하인으로 고용되는 일, 담보노동, 상업적인 성 착취를 당하는 일, 공장의 직공일, 길 거리를 무대로 하는 노동,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는 일, 여자어린이의 노동이 바로 그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주요국가의 아동 노동의 현황은 다음의 2개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 4>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아동노동 현황

국가	노동 아동의 수(연령별)	여자비율(%)	남자비율(%)
아르헨티나	252,683(10-14세)	43	56.7
브라질	2,908,341(5-14세)	36.5	63.5
칠레	47,000(6-14세)	2	6.3
파라과이	233,096(10-14세)	35.7	64.3
우루과이	34,000	4.6	8.3
엘살바도르	185,283(10-17세)	29.3	70.3

출처: Save the Children-Suecia. *Diagnóstico sobre la situación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en 21 países de América Latina*, 2003, p.47 참조.

<표 5>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10-14세 전체 아동인구 중 노동인구 비율

국가	10-14세 전체아동인구(명)	10-14세 아동노동인구(명)	비율(%)
아르헨티나	3,197,582	214,238	6.7
볼리비아	386,222	54,549	14.1
브라질	17,588,115	3,599,747	20.5
칠레	755,227	14,914	2
콜롬비아	2,327,823	367,796	15.8
에콰도르	1,391,433	420,663	30.2
파나마	278,631	12,603	4.5
파라과이	602,417	49,097	8.15
페루	4,928,899	801,033	16.2
우루과이	253,846	5,780	2.08
베네수엘라	3,205,592	80,781	2.52
계	51,113,416	7,613,198	14.9

출처: Save the Children-Suecia. *Diagnóstico sobre la situación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en 21 países de América Latina*, 2003, p.48 참조.

위 <표 4>에서 칠레의 경우는 노동 아동인구의 각각 2%와 6.3%의 비율은 전체 31,782명으로 추산되는 12-14세의 아동인구만을 계산한 것이고, 우루과이의 경우 4.6%의 여자 비율은 전체 526,800명으로 추산되는 5-17세의 도시 아동인구의 비율로부터 계산한 수치이다. 또한 엘살바도르의 노동 아동인구는 엘살바도르정부가 발표한 1991-2000 연례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한편 브라질의 경우, 헌법에서 14세 이하는 어떠한 형태의 노동도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12세부터 노동현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90년대 들어 10-16세의 일하는 아동의 수는 750만 명이고, 그 중 300만 명은 14세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인데 이들 중 상당수는 ‘거리의 아이들’로 생활하고 있기도 하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난 2002년 브라질지리통계연구원(IBGE: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이 세계노동기구(ILO)와 공동연구 조사한 바에 따르면, 5-17

세의 일하는 아이들의 수는 지난 1992년 840만 명에서 2001년 540만 명으로 34.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9만 6000명은 5-9세, 190만 명은 10-14세 그리고 15-17세가 25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조사는 또한, 지난 2001년 5-14세의 일하는 아동의 약 48.6%는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1.4%의 대가를 받는 아동들의 숫자 가운데 41.5%는 최저임금의 1/2미만을 그리고 35.5%는 최저임금의 1/2에서 1까지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는 극심한 빈부의 차이와 지역별 불평등을 보여주는 북동부지방과 남부, 남동부지방간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북동부지방이 평균 16.6%인 반면, 남부지방은 15%미만의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6> 브라질 아동 노동의 지표

아동인구(명)				15-17세 취학률(%)		임금지표(%)		
5-9세		10-14세		1992	2001	무임금	최저임금 1/2이하	최저임금 1/2-1배
1999	2001	1991	2001					
383,251	296,705	2,587,281	1,935,269	75.8	89.7	48.6	41.5	35.5

출처: IBGE. CENSOS, 2003, pp.240-151 참조.

V. 결론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아동은 어쩌면 더 이상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금 라틴아메리카는 지속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라틴아메리카는 ‘방향의 전환(*shifting directions*)’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현재 라틴아메리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러한 쟁점 앞에서 아동에 대한 또 다른 ‘다른 세계’를 만드는 과정이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리고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미래에만 국한되고 라틴아메리카의 담론으로만 규정되어지는 쟁점이 아니다. 날로 거세지는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야만에 맞서 투쟁하는 전 세계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의식주 보장을 포함하여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 학대나 폭력,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하며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할 때 라틴아메리카는,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특히 절대 빈곤의 현실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극심한 빈곤과 열악한 교육환경, 사회적 고립은 장기간에 걸쳐 라틴아메리카 아동에 대한 학대로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동 노동력의 착취, 성적 노예, 아동의 음란물 출연, 아동 매매, 매춘, 장기 판매, 마약 판매의 강요, 가정에서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AIDS에 감염된 아동에 대한 차별, 내전에 의한 아동 또는 가족의 추방과 난민 상태, 퇴폐적 환경 등이다. 이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사회의 경제적 후원을 박탈당한 채 ‘거리의 아이들’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최악의 폭력에 희생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들이 기본적인 아동의 인권과 삶의 지속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때, 앞으로의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아동에 대한 차별과 억압, 그리고 학대를 극복하기 위한 이들 국가와 세계의 노력, 특히 빈곤퇴치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도 ‘대안적인 모델’은 무엇이며, 이 가운데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운동 및 정치운동 세력, NGO들, 혁신적인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와 경험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데 본 연구가 지향해야 할 점이다.

Abstract

Fundada nos princípios da Declaração Universal dos Direitos humanos (1948) e no instrumento dos Direitos da Criança (1959) a Conferência Mundial sobre os Direitos Humanos promoveu em 1989 a Convenção das Nações Unidas sobre os Direitos da Criança. Até o fim de outubro de 2003, os termos da Convenção já haviam sido ratificados por 192 países do mundo. Ao ratificá-los, esses países tornaram-se obrigados, por lei, a tomar todas as medidas adequadas (determinadas pela Convenção) para dar assistência aos pais ou responsáveis no cumprimento das obrigações para com suas crianças.

A Declaração tem contribuído para aprofundar o debate público em torno de questões como sexualidade infantil, consumo de drogas por crianças e adolescentes, trabalho infantil, metodologias de ensino e reinserção social de adolescentes infratores. A reflexão coletiva desses temas tem sido fundamental para o avanço dos padrões culturais e para a melhoria das políticas públicas nessa área.

Entretanto, não se podemos dizer que a situação da infância nos países da América Latina, incluindo-se o Brasil, não tenha melhorado ao longo do século XX e do XXI. Muito pelo contrário, quase todos os indicadores sociais mostram os consideráveis avanços alcançados. Mas a situação da criança na América Latina, neste século, apresenta tristes índices e uma constrangedora e evidência de violação dos seus direitos em frente da aceleração de pobreza grave vinda conjuntamente com a era do neoliberalismo.

O desafio tem que ser encarado de frente: a curto prazo, prover recursos técnicos e financeiros para socorrer aqueles que já se desviaram; a médio e longo prazos, melhorar condições de vida da população possam criar seus filhos com dignidade e ampliar as oportunidades de desenvolvimento integral das crianças e adolescentes -

o que é um direito de todos os cidadãos do mundo.

Key Words: Latin America, Brazil, Poverty, Human Rights, Children's Rights,
Child Labor / 라틴아메리카, 브라질, 빈곤, 인권, 아동인권, 아동
노동

논문투고일자: 2008. 07. 12

심사완료일자: 2008. 08. 04

게재확정일자: 2008. 08. 08

참고문헌

- 권형준(1998), 「어린이 기본권에 관한 고찰-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 류은숙(1997),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내일을 여는 책.
- 유엔사회개발연구소(1995), 『벌거벗은 나라들 - 세계화가 남긴 것』, 한송.
- 이배근(1997),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아동권리연구, 창간호.
-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2001),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정진영(1994), 「브라질의 경제개혁」, 계간사상, 가을호, pp. 137-138.
- Alves, J. A. Lindgren(2005), *Os direitos humanos na pós-modernidad*, São Paulo: Perspectiva.
- Castro, Monica Rabello de(1997), *Retóricas da rua: Educador, criança e diálogos*, Rio de Janeiro: EDUSU/AMAIS.
- Cury, Munir et al.(Coord.) e Irene Rizzini et al.(Org.)(1992), *Estatuto da criança e do adolescente comentado: comentários jurídicos e sociais*, São Paulo: Malheiros.
- Donnelly, Jack(1993),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ulder: Westview Press.
- Fausto, Ayrton e Ruben Cervini(1991), *O trabalho e a rua: crianças e adolescentes no Brasil Urbano in the 1980's*, São Paulo: Cortez.
- IBGE Censos 2003
- Koller, S. H e C. Hutz(1996), “Meninos e meninas em situação de rua: dinâmica, diversidade e definição”, *Coletânea da ANPEPP*, No. 1, pp. 11-34.
- Moraes, Patrícia et al.(1994), *A menina e a adolescente no Brasil: uma análise da bibliografia*, Rio de Janeiro: Editora Universitária

Santa Ursula/AMAIS.

- Oliveira, J.S(Org.)(1993), *O traço da desigualdade social no Brasil*, Rio de Janeiro: IBGE.
- Rizzini, Irene(1992), “Infância, adolescência e pobreza na década de 80: a situação da menina”, *Revista humanidades*, Brasília, Vol. 8, No. 1, pp. 28-36.
- _____ (1996), “A infância pobre e excluída da sociedade brasileira; Reflexões sobre o papel da Universidade”, *Cadernos NUPEC*, Vol 1, No. 1, Piauí, pp. 20-24.
- _____ (Org.)(1997), *Olhares sobre a criança no Brasil: século XIX e XX*, Rio de Janeiro: USU Ed, Universitária/CESPI/USU, AMAIS Livraria e Editora.
- _____ (1998), “Poor Children in Latin America: A Case Example of Social Inequality”, *Children's Legal Rights Journal*, Vol. 18, No. 1, winter, New York, pp. 50-70.
- _____ (2000), *A criança e a lei no Brasil: revisitando a história (1822-2000)*, Rio de Janeiro: USU Ed. Universitária/CESPI/USU /UNICEF.
- Rizzini, Irene and Mark W. Lusk(1995), “Street Children: Latin American Lost Genera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 17, No. 3, New York, pp. 387-396.
- Save the Children-Suécia(2003), *Diagnóstico sobre la situación de niños y adolescentes en 21 países de América Latina*, Informe de Noticias Aliadas, Marzo, Lima.
- Secretaria de Ação Social(1994), *Report on Census of Street and Working Children*, Fortaleza: Secretaria Estadual (Ceará) de Ação Social.
- Sen, Amartya(1982), *Poverty and Famines: An Essay on Entitlements and Depriv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Stephens, Sharon(1995), *Children and Politics of Cultu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UNICEF(1993), *Situation Analysis-Country Programme 1994-2000*, Children and Adolescents - Right to Have Rights, Brasília: UNICEF.
_____(2002), *Annual Report: The State of the World Children*.

<http://www.ajlas.org>

<부록> 라틴아메리카 주요국 기본 현황지표

국 가	2001년 인구 (천명)		5세미만 사망률		2001년 총인구 (천명)	2001년 출생아 (천명)	2001년 5세미만 사망자(천명)	2001년 1인당 국민소득(US\$)	2001년 성인문맹률 (%)	1995-2001년 초등교육 취학 증가률(%)	1992-99년 중앙정부 예산 지출비(%)		
	18세미만	5세미만	1960	2001							보건	교육	국방
아르헨티나	12278	3515	72	19	37488	724	14	6960	3	400	2	6	4
볼리비아	3895	1221	255	77	8516	267	21	940	14	91	10	20	7
브라질	59214	16021	177	36	172559	3363	121	3060	15	97	6	6	3
칠레	5134	1433	155	12	15402	287	3	4350	4	89	12	18	8
콜롬비아	16407	4752	125	23	42803	979	23	1910	8	90	9	20	13
에콰도르	5108	1467	178	30	12880	308	9	1240	8	98	11	18	13
엘살바도르	2651	802	191	39	6400	167	7	2050	21	81	5	24	7
과테말라	5877	1874	202	58	11687	409	24	1670	31	81	11	17	11
온두라스	3173	969	204	38	6575	204	8	900	19	86	10	19	7
멕시코	38933	11126	134	29	100368	2295	67	5540	9	100	4	26	3
니카라과	2576	810	193	43	5208	173	7	420	36	80	13	15	6
파나마	1062	300	88	25	2899	61	2	3290	8	98	17	4	12
파라과이	2586	784	90	30	5636	170	5	1300	7	91	7	22	11
페루	10219	2893	234	39	26093	606	24	2002	10	100	5	16	11
우루과이	983	283	56	16	3361	58	1	5670	2	94	6	7	4
베네수엘라	98	30	75	22	24632	577	13	4760	7	88	7	22	5

출처: UNICEF(2003). Estado Mundial de la Infancia. UNICEF: New York, pp. 84-87, 100-107.